

2. 피고에 대하여

가. 피고의 정관 또는 학칙·규정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재임용절차 설명

당시의 재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임용심사용 연구실적물 제출 통보 → 재임용 연구실적 접수 결과보고

→ 소속 대학장에게 재임용 심사평정 의뢰 → 재임용대상 교원 심사평정표 접수 결과
보고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교무위원회 보고 → 이사회에서 교원 재임용 심사
심의·의결 → 교원 재임용 발령 및 통보



□ 입증자료: 위 1.가.(2)항과 같습니다.

나. 갑 제2호증 재임용대상자연구실적목록 및 심사평정결과와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
와 관련

(1)문서작성자 및 작성시기

‘재임용 대상자 연구실적목록 및 심사평정결과’는 재임용 대상 교원 심사평정 접수
결과 보고(‘96.1.26) 공문의 첨부문서로서 당시 교무처 담당직원이 1996년 1월경 작
성한 것인데, 재임용대상교원 연구실적 접수결과 보고 및 심사평정 의뢰(‘95.11.24)
공문에 의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보내어진 재임용 심사평정결과를 취합하여 작성한
공문입니다.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는 당시 이과대학장이 1995년 12월말에서 1996년 1월 중순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문서작성근거: 교원인사규정 제21조 및 제23조

(3)원고 제출의 연구실적에 대해 ‘부적격’이라 평정한 사유 및 근거: 소속 대학장이
보낸 재임용 심사 평정 결과를 접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관련 자료
는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4)재임용대상교수에 대한 평정항목별 평정등급의 기준: 평정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성적등급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등급기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5)원고에 대한 B 내지 E.등급의 기준: 현재 구체적인 관련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6)평정자가 참조한 '징계위 자료': 현재 구체적인 관련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 평정표 작성이 1995년 12월 22일에서 1996년 1월 15일 사이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통보된 일자가 1995년 12월 12일이고 정직처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자료를 참조하였다고 봅니다.

(7)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 말미의 부적격표시의 기준과 근거: 현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 입증자료

을제15호증의 2 재임용연구실적 접수결과보고 및 심사평정 의뢰

을제15호증의 7 재임용대상교원 심사평정표 접수결과보고

을 제2호증 규정집(교원인사규정)

다. 을제2호증 규정집과 관련하여

(1)이 사건 재임용거부당시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무: 별도의 규정은 없었음.

(2) 연구실적심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유무, 이 사건 재임용심사 당시 위 각 위원회의 구성여부: 연구실적심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고,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학교법인 정관 제51조 ~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 소속 대학장의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와 '재임용 대상자 연구실적목록 및 심사평정결과'를 감안할 때 구성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3) 위 문서의 전체제출: 교원인사규정의 일부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편철상의 실수로 4-2-1~8에서 왼쪽으로 4-2-1~9로 이어져 있을 뿐이나, 교원인사규정을 새로 제출하고 이를 기존의 을 제2호증과 교체하고자 합니다.

□ 입증자료 : 을제16호증 정관(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라. 갑제1호증 및 갑제2호증 중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의 각 기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1993. 3. 1.자 재임용심사 및 1996. 3. 1.자 재임용심사에서의 평정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

평정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996. 3. 1.자 재임용 심사 당시 원고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1996. 3. 20자로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청구에서 '견책'으로 변경되었다 하나 '견책'만으로도 징계가 확실한 만큼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상의 중요한 평가항목인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기타 학내·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여부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마. 1995. 1.경 실시된 대학별 고사 수학2의 주관식 7번 문제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없었다면 그 사유, 원고의 오류지적 이후의 경과

입학처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 제23호증(=을 제17호증의2) 수학 및 수학교육과 교수일동의 증언 기재 내용에 의하면, 95학년도 수학2의 채점과정에서 원고가 문제에 잘못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수학2 채점을 담당하는 수학과, 수학교육과 교수들이 연석 회의를 열고 문제를 검토, 분석 논의한 결과, 문제에는 잘못이 없었으며 1차 채점을 통하여 모든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없는 채점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어떤 경우에도 위 기준으로 채점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실제로 위 기준에 따라 채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위 수학과교수들의 결정을 부인하고 채점위원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대외에 알리는 등 입학시험 채점업무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을 야기한 것입니다.

바. 을 제3호증의1 기재와 관련하여 원고 징계사건의 재심청구에 관한 변명자료 중 누락된 부분 제출

□ 재심사건 변명자료 누락 부분 중

2, 3쪽은 을 제4호증 변명서에 보충하고, 11쪽은 을 제14호증의 5로, 32쪽은 을 제17호증의 2로, 34쪽은 을 제17호증의 3으로 각 제출하고, 35쪽은 을 제9호증의 3 진술서에 보충하고, 44쪽은 을 제17호증의 7로, 67쪽은 을 제17호증의 8로, 90 내지 94쪽은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로, 100쪽은 을 17호증의 6으로, 134 내지 155쪽은

을 제16호증으로 각 제출합니다. 나머지 95 내지 99쪽, 128 내지 131쪽은 추후 확인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 을제4호증과 관련하여

(1) 피고가 말하는 성적평가 원칙이 무엇인지, 위 원칙에 관한 정관 또는 학칙·규정이 무엇인지, 성적평가 원칙이 절대평가방식 인지 상대평가방식인지

성균관대학교학칙 제35조에 의하면 '① 학생은 해당과목 총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예습·과제 및 시험성적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절대평가 방식이었습니다.

(2) 각 교과목 성적기록표에 각 항목별로 성적을 기재, 제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정관 또는 학칙·규정상의 근거

1995년 2학기 논리학 성적기록표의 예와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성적기록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성균관대학교학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증자료

을제18호증의 1 성균관대학교학칙

을제18호증의 2 1995년 2학기 논리학 성적기록표

아. 을 제11호증의7 성적열람의 기재와 관련하여 1994. 1.학기 수학 I 과목 수강신청학생수(51명, 그 중 5명 수강철회)가 갑제30호증의1 출석부(81명, 그 후82명으로 변동)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 및 위 을제11호증의7 중 누락된 문서가 있는지

현재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 을 제12호증의4 보충강의건의 기재와 관련하여 원고와 학생들 사이의 원만치 못한 관계로 29명의 학생들이 F처리, 여기서 '원만치 못한 관계'란 무엇인지

위 정봉화 교수는 1994년에 퇴직하여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바, 조만간 연락을 취하여 위 서면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증서나 증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 9.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 재 원

정 재 응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귀 중